Deloitte.

MAKING AN IMPACT THAT MATTERS since 1845

Korea | Tax | 3 December 2025

Korean Tax Newsletter

2025 년 11 월

CONTENTS

세법개정

- 2025 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세무동향

- 국세청, 2025 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 국세청,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 발표

예규판례

○ **법원**

-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의 일시보유목적 자기주식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 **조세심판원**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후 같은 사업연도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기준지분비율 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게임 출시 이후 디자인개발에 참여한 임직원 인건비가 조특법 제 10 조 제 1 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 플랫폼사업자에게 웹툰 원본 파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거래가, 부가세법상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여부
- 쟁점촉매 교체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 **행정안전부**

- 기존 영위중인 업종 외 감면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시 이를 사업장 신설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청**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계산

■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등 운용 용역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공제 취급 관련

세법개정

2025 년 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5.12.2.(화) 본회의를 개최하여 법인세법 등의 2025 년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정부가 '25.9.3.(수)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1.3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수정내용 ☞ 보도자료(Link)

■ 국세징수법

○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 유예(국징법 §103)

〈수정안〉 시행시기 3 개월 유예('26.7.1. ⇒ '26.10.1. 이후 시행)

〈수정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집행 준비기간 확보

■ 부가가치세법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개정안〉 (정부안 없음)

-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3% ⇒ 4%)

〈개정이유〉 조세탈루 방지

■ 개별소비세법

○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경감 신설(개소법 §1②)

〈개정안〉 (정부안 없음)

- 합성니코틴 담배 한시적 감면 신설
-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일부개정안 시행일)부터 2 년간 세율 50% 감면 적용

〈개정이유〉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영세사업자 초기 부담 경감

■ 조세특례제한법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조특법 §8 의 3)

〈수정안〉 공제대상 기금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중소기업 보증·대출지원) 10%
-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 5%

〈수정이유〉 수출기업 상생협력 지원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조특법 §12 의 2③)

〈수정안〉 감면한도 확대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 만원(청년·서비스업·연구개발우수인력 2,000 만원)

〈수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85 의 6②)

〈수정안〉 감면 확대

- (감면율) 3 년 100% + 2 년 50% + 5 년 30%

〈수정이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율 인하 등**(조특법 §104 의 27)

〈수정안〉 대상요건 정비 및 적용세율 인하

- (전제요건) 기준연도('24 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대상)
  ① 배당성향 40% 이상
  ②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 (적용세율)

과세표준	2 천만원 이하	2 천만원 ~ 3 억원	3 억원 ~ 50 억원	50 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25%	30%

-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수정이유〉 국회 심의결과 반영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 의 33①)

〈개정안〉 (정부안 없음)

- 적용기한 연장('26.12.31. ⇒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 **관세법**

○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3 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관세법 §89⑥1 호)

〈개정안〉 (정부안 없음)

- 100% 면제 3 년 연장 및 감면율 단계적 축소 구간 폐지

수입기간	'25.1.1. ~12.31.	'26.1.1. ~12.31.	'27.1.1. ~12.31.	'28.1.1. ~12.31.	'29.1.1. ~
감면율(%)	100	100	100	100	0

〈개정이유〉 항공산업 경쟁력 지원

■ **농어촌특별세법**

○ **농어촌특별세 납부유예 규정 신설**(농특세법 §9 의 2)

〈개정안〉 (정부안 없음)

- 본세를 납부유예 받은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해당 본세 납부유예의 예에 따라 납부유예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25 년 세제개편안('25.7.31.)」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6.1 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 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2.1. ~ 12.15.),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6.1.1. 시행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5.12.1.)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보도자료(Link)

○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개정안〉 세율 조정

- (탄력세율)
  ① 코스피: 0%(농특세 0.15%) ⇒ 0.05%(농특세 0.15%)
  ② 코스닥·K-OTC: 0.15%(농특세 없음) ⇒ 0.20%(농특세 없음)
  ③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 의 3)

〈개정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① 상장법인의 대주주, ② 비상장법인 주주(K-OTC 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세무동향

국세청, 2025 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국세청은 '25 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11 월 24 일(월)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 월 15 일(월)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11.26.)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세청 보도자료(Link)

○ 고지인원 및 세액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54 만 명 1.7 조 원, 토지분 11 만 명 3.6 조 원, 총 63 만 명(주택분과 토지분 중복인원 2 만 명 제외) 5.3 조 원

○ 분납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포함)이 300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 개월까지 분납 가능
- 분납은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분납대상자는 전체 고지세액에서 분납세액('26.6.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납부

○ 납부유예
- 1 세대 1 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 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 년 이상 보유)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음
- 납부유예 신청기간은 12 월 12 일까지이며,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1.3 만 명)에게는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

○ 신고·납부
-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과 다르더라도 사실에 맞게 자진신고하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할 수 있음

국세청,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 발표

국세청은 우수한 제조업 기술과 숙련된 인적 자원을 갖춘 한국을 '경쟁력 있는 투자처'로 만들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11.28.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국세청은 글로벌 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에 발맞추어 세무조사 및 세금신고 등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보도자료(2025.11.28.)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국세청 보도자료(Link)

○ 국내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최대 2 년간 유예

-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투자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25.12.1 부터 시행)
-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투자금액(조특법 제 24 조의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 확인 후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 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외국계기업·외국인의 세무신고 편의 증진 및 이중과세 부담 완화

- 외국계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하여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신고 안내책자를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세청에서 9 월부터 운영 중인 「AI 대전환 추진단」을 활용해 'AI 기반 외국어 상담'을 구현해 나갈 예정
- 외국계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서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dvanced Pricing Arrangement, APA)'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

예규판례

[법원]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저가 양도된 비상장법인의 일시보유목적 자기주식 시가 산정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10. 30. 선고 2025 두 33647 판결, 상고기각)

■ 쟁점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1 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사안

피고들은, 비상장법인인 원고가 원고 사주 일가에 일시 보유 목적으로 원고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상여·배당·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면서 원고 사주 일가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안으로, 해당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1 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제 54 조 제 1 항 본문에 따라 1 주당 순손익가치와 1 주당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이 1 주당 순자산가치에 100 분의 80 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이 충족되는 경우 원고 발행 주식의 1 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쟁점이 된 사건임

판결요지

자기주식은 상법 제 341 조, 제 369 조 제 2 항 등에 의하여 취득이 제한되고, 의결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등의 특성도 있지만, 소각을 위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이 아닌 한 상당기간 내에 처분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이 처분을 전제로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불과한 경우 양도성과 자산성 측면에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은 순자산을 증감시키는 거래로서 법인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손익거래에 해당함(대법원 1992. 9. 8. 선고 91 누 13670 판결,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 누 21583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됨(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 두 443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 두 18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리와 더불어,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1 항, 제 2 항의 문언, 체계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자산성과 양도성을 지닌 자기주식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행회사가 일시적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의 가액과 그 자기주식 외의 발행주식의 가액은 서로 같아야 할 것이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 54 조 제 1 항 단서가 적용될 때 자기주식을 포함한 비상장주식의 1 주당 가액(X)은 같은 조 제 2 항에 근거하여 'X = {자기주식 외 순자산가액 + (자기주식수 × X)} ÷ 발행주식총수 × 80%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야 함

[조세심판원]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후 같은 사업연도에 일부를 양도한 경우,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의 '기준지분비율 초과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 서 4898, 2025.9.18., 취소)

■ 쟁점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을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내 일부 양도한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제 12 조의 4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보유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사안

청구법인은 온라인쇼핑 중개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주식회사 A(이하 "인수법인")는 2019.2.28. 주식회사 B(이하 "피인수법인")의 주식 200,000 주(지분율 100%)를 양수하였음. 인수법인은 2019.7.25. 피인수법인의 주식 중 30,000 주를 C 유한회사에게 양도하여,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2019.12.31.) 당시 피인수법인의 주식 170,000 주(지분율 85%, 이하 "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었음

한편, 청구법인은 2022.12.1. 사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인수법인을 합병한 다음, 2023.8.31. C 유한회사로부터 피인수법인의 잔여 지분을 모두 취득하고 피인수법인을 합병하였음. 청구법인은 2024.4.2. 쟁점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 12 조의 4 에 따른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 2019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 일부를 동일 사업연도 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처분청은 인수법인이 최초 취득일 현재 취득한 피인수법인의 주식 100% 중 동일한 사업연도에 15%를 양도하여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액공제의 적용 요건(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 12 조의 4 제 1 항에서 인수법인이 2021.12.31.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혁신형 피인수법인의 주식 등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하는 경우 매입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가치 금액의 100 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1 호에서 인수법인이 피인수법인의 주식등을 최초 취득한 날(취득일) 현재 1 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취득일 것과 제 2 호에서 인수법인이 취득일에 취득한 주식등이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50(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인수법인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취득일 현재 기준지분비율(50%)을 초과한 이후 동일한 사업연도에 추가로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라도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배력 획득' 측면에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요건인 '해당 주식등'은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한 주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쟁점세액공제는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을 촉진하여 벤처 창업자 등의 투자금 회수 및 재투자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배력 획득을 통한 기술취득의 경우에도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서, 인수법인은 취득일 현재 피인수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고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에 일부 지분(15%)을 양도하였으나 동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지분비율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점, 쟁점세액공제의 사후관리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 12 조의 4 제 2 항 제 3 호에서 취득일이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보다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분에 상응하는 세액만을 추징하는 것으로 2018.12.24. 관련 법령의 취지에 맞게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인수법인이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쟁점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12 조의 4 제 1 항 제 2 호의 보유요건

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게임 출시 이후 디자인개발에 참여한 임직원 인건비가 조특법 제 10 조 제 1 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5 서 0865, 2025.9.25., 경정)

■ 쟁점

쟁점디자인개발에 참여한 임직원 인건비인 쟁점비용이 조특법 제 10 조 제 1 항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 사안

주식회사 A(이하 "A")는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0.12.2.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하고, A 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이라 함)를 흡수합병하였음. B 는 2011 년~2018 년 기간 중 온라인게임을 출시하였는데, B 는 게임들을 런칭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규 콘텐츠 디자인 개발활동(이하 "쟁점디자인개발")을 수행하였음

B 는 2011~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소 소속 디자이너·개발자에 대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연구소 소속 외 디자이너·개발자 인건비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이후 B 는 연구소 소속 외 디자이너·개발자 등의 인건비 합계가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조특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 295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6 제 1 호 사목]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3.3.30. 처분청에 2017 및 2018 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 경정청구(2016 사업연도 이전 비용은 2017 사업연도에 이월공제적용)를 제기하였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게임 런칭 이전의 고유디자인 비용은 조특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구개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해당 인건비 합계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한편, 게임 런칭 이후의 개발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련 인건비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청구세액 중 일부만 감액경정(환급)하였음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디자인개발이 고유디자인 개발 활동으로 조특법상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며, 처분청이 거부처분한 부분 중 대표이사 인건비 등 제외대상 외의 인건비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연구개발의 속성상 그 비용이 기업의 수익발생과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실패의 위험이 따른다는 측면에서 기업이 감내해야 하는 비효율과 위험에 대하여 세액 감면이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대법원 2014.3.13. 선고 2013 두 22147 판결 참조), 이 건에 있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활동과 그 비용은 독창적이고 계획적인 연구개발이라는 고유디자인 요건과 실패 위험이 있는 과학적 내지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 또는 새로운 서비스 전달체계 개발 활동이라는 연구개발 요건을 충족하면 될 뿐, 단편적으로 게임 등의 런칭 전과 후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할 사항은 아니고, 런칭 후의 개발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디자인 모방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이 건에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고유디자인 상세 개발과정 내역의 기획과정과 신규 맵 출시 후 유저 숫자 변화추이 분석자료를 보면, 공간적 배경(건축스타일, 자연지형 및 환경 등)에 중점을 두어 각 맵을 기획하고 개발하였고, 구체적인 스토리 및 세계관은 2017 년 후반부터 기획하여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으며, 런칭 이후 신규 맵 출시 이후 유의미한 유저 숫자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런칭 이후 개발한 신규 콘텐츠 디자인이 각자 고유한 개발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7 년 12 월 개발한 월드 <OOO>

의 개발 과정과 결과물을 보면 신규 콘텐츠 디자인이 각자 고유한 개발컨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단순한 버전 업그레이드나 통상적인 개발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소 소속 디자이너·개발자에 대한 쟁점디자인 개발 관련 인건비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을 신고 시인하였는데, 연구소 소속 외 임직원의 쟁점디자인 개발 관련 인건비에 대하여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없이 런칭 전과 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일관성이 결여되고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점,

게임개발업의 특성상 제품의 런칭 이후에도 캐릭터, 아이템, 맵, 스토리 등 신규 콘텐츠의 지속적인 추가 출시를 위하여 런칭 이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개발활동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 건에 있어 런칭 이후의 쟁점디자인개발 활동을 단순히 제조업 등에서의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조세심판관회의 당시 시연한 동영상 내용을 보면, 기존 맵과는 차별성이 있는 컨셉과 전투방식, 월드, 화면 표현기법 등 기존에는 없었거나 기술적으로 표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법을 구현한 것으로 나타나 여기에 기술적 진전이 있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새로운 서비스 개발이나 전달체계 개발을 위한 창의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거나, 기술적 진전이 있는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처분청이 게임 런칭 이후 연구소 소속 외 디자이너·개발자가 개발한 신규 콘텐츠 결과물 관련 비용인 쟁점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조세심판원] 플랫폼사업자에게 웹툰 원본 파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거래가, 부가세법상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3 서 0705, 2025.10.27., 취소)

■ 쟁점

웹툰 작가가 설립한 법인이 해당 작가의 웹툰 저작권을 위탁받아 관리하면서 플랫폼사업자에게 웹툰 원본 파일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한 거래가, 부가세법상 전자출판물 공급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인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웹툰작가인 A 가 100% 출자하여 온라인정보제공업을 주업종(부업종 : 만화출판업)으로 설립되었고, A 가 창작한 저작물인 'B' 등 웹툰(이하 "쟁점웹툰")에 관한 저작권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제 3 자로부터 쟁점웹툰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수취하는 등의 사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음

청구법인은 쟁점웹툰에 대하여 C 웹툰 주식회사(이하 "C")와 '웹툰 제공 계약', 'C 북스 서비스 컨텐츠 제공 계약', '컨텐츠 제공 계약' 등을 체결한 후, 쟁점웹툰을 전자파일 형식으로 C 에 제공(이하 "쟁점거래")하여 C 로 하여금 쟁점웹툰을 온라인 웹사이트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8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1 항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보아, 쟁점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제 26 조 제 1 항 제 8 호, 같은 법 시행령 제 38 조 제 1 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6 조 등에 의하면, ① 도서나 간행물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도서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위 위임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자출판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기준 고시'에서는 전자출판물의 기준을 i) 출판법 제 2 조 제 4 호에 의한 전자출판물, ii) 출판법 제 2 조 제 3 호의 간행물, iii) 도서관법 제 21 조의 국제표준자료번호 부여 등으로 정하고 있음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출판법상 출판업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A가 창작한 쟁점웹툰을 전자출판물의 형태, 즉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독자들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플랫폼사업자인 C 에게 배타적발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해당 배타적발행권은 청구법인이 C 에게 쟁점웹툰의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부수적인 수단을 부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발간한 한국문헌번호 편람에 따르면 국제표준자료번호는 특정한 출판물을 고유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발행처와 공동으로 발행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유통책임을 진 발행처가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웹툰을 C 에게 제공하는 시점에는 쟁점웹툰에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C 가 이를 전자출판물의 형태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전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음에 따라 쟁점웹툰은 기록사항이 표시된 전자출판물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도서와 마찬가지로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출판물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령상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일반도서와의 과세형평성을 확보하고 디지털콘텐츠산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만약 전자출판물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 종국적으로 소비자(쟁점웹툰 이용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어 전자출판물 등 도서의 소비권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웹툰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전자출판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조세심판원] 쟁점촉매 교체비용이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24 부 5974, 2025.11.10., 취소)

■ 쟁점

쟁점촉매가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쟁점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안

청구법인은 프로판에서 수소를 제거하여 프로필렌을 제조하는 PDH 사업(Propane De-Hydrogenation)을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 2016 년 준공한 탈수소화설비(이하 "PDH 설비") 중 반응기(Reactor) 내부에 투입되는 촉매의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활성도가 저하되어 2020 년 기존에 설치된 촉매를 제거한 후 동일한 종류의 촉매(이하 "쟁점촉매")로 교체하면서 이를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 1775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 제 25 조 제 1 항 제 6 호에 따른 특정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쟁점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촉매가 생산성향상시설로서 쟁점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촉매는 기존설비의 원상유지를 위한 부품의 교체에 해당하여 자본적 지출로서 쟁점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최초 투자 시 설치된 약 OOO 톤의 촉매를 완전히 제거하고 더 큰 적재량인 약 OOO 톤의 신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OOO 원에 이르는 금액을 투자하여 쟁점촉매를 설치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프로필렌 생산량 역시 2020 년 OOO 톤에서 2021 년 OOO 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쟁점촉매의 설치는 단순히 '원상유지를 위한 개체'라기보다는 '생산능력 증대를 위한 대체투자'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촉매는 기계장치인 반응기와는 별도인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하여 4 년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된 PDH 설비를 통하여 프로판을 분해 및 분리하여 프로필렌을 생산하는데, 이때 반응기에 설치되는 촉매는 화학반응이 최적화·활성화되도록 기능하는 반면, 반응기는 최적화된 온도·압력 등을 제공하여 촉매가 화학반응을 원활히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용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바, 이러한 촉매 및 반응기의 기능이나 역할 등을 고려해 보면 쟁점촉매를 반응기의 일부인 부속품으로 보기보다는 프로필렌 생산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으로서 PDH 설비의 일종으로 봄이 타당해 보이는 점, (…)

그 밖에 처분청도 PDH 설비가 분산제어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고 있고, 대상자산의 특성상 연관된 수많은 기계장치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해당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2016 년 최초 투자한 PDH 설비(촉매 포함) 전체 금액을 쟁점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하여 관련 법인세를 환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촉매는 반응기와 구분되는 개별자산으로서 프로필렌 생산에 필수적인 사업용 자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생산능력 증대를 위해서 거액의 촉매를 개체하고 하는 쟁점촉매 교체비용을 쟁점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행정안전부] 기존 영위중인 업종 외 감면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시 이를 사업장 신설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2779, 2025.10.30.)

■ 질의

기존 영위중인 업종 외 감면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시 이를 사업장 신설로 보아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5 조의 5 제 1 항에서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및 사업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토록 규정한 바, 사업장 신설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선 사업장이란 「지방세법」 제 85 조 제 1 항 제 10 호에서 인적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의 사업장 유무는 상관 없으나 기존의 사업장 확장 등이 아닌 신규 투자 유인을 통한 인구감소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최소한 기존의 사업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단독 사업장으로서 사업을 영위해야 할 것임(지특과-760, 2023.11.22.)

상기 유권해석을 토대로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이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독립된 단독 사업장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납세의무 성립 당시 질의법인의 기존 사업장과 쟁점 사업장은 각각 구분되어 별개의 업종을 독립하여 영위중이며, 쟁점 사업장은 감면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로 직원을 채용하여 인적요건을 갖추었으며, 기존 사업장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 등을 취득하여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질의법인은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구분되어 독립된 쟁점 사업장을 설치하였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이 건 감면규정은 인구감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것으로, 질의법인은 해당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장 신설을 통하여 시설투자 및 일자리 제공 등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볼 것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5 조의 5 제 1 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실제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서류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국세청]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계산

(서면-2025-법인-1882, 2025.9.11.)

■ 질의

질의법인의 영위하던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

- (1 안) 기존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1,655 억원)
- (2 안)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후 통산된 질의법인의 각 사업소득금액의 60%(1,592 억원)

■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관광숙박업·체육시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1.7.1.(합병등기일) 부동산 기획, 시설관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하, 피합병법인)을 적격합병함
- 적격합병 당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없음
- 질의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 보유 중인 이월결손금(1,882 억원)을 '22 사업연도 중 발생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자 함

'22 사업연도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합병법인) 기존사업	(피합병법인) 승계사업	합계
소득금액(A)	2,759 억원	△105 억원	2,654 억원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A) x 60%]	1,655 억원	-	1,592 억원

회신

구 법인세법 제 45 조 제 5 항의 제 1 호(법률 제 19193 호, 2022.12.31.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결손금의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의 100 분의 60('23.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100 분의 80)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임. 이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되는 것임

[국세청]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부동산 등 운용 용역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 및 매입세액공제 취급 관련

(서면-2025-부가-1227, 2025.11.19.)

■ 질의

모집합투자기구에서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에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

■ 사실관계

- 자산운용사인 질의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를 자본시장법에 따른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여 다음과 같이 운용하고 있음

  • 모집합투자기구는 부동산을 취득·관리·처분하여 그 수익을 주주인 자집합투자기구에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과세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등록

  • 자집합투자기구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당을 받는 등의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면세사업자(금융업)로 등록

- 질의법인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와 자산운용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업무에 대한 보수는 모자형 투자기구의 정관에 따라 지급
- 정관에 따르면, 투자회사보수(자산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사무관리보수) 및 집합투자에 대한 성과보수와 매각보수는 자집합투자기구에서만 부담 및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모집합투자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구분 없이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수수료를 일괄하여 계산

회신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면서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부동산 운용 용역을 제공하고 운용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64, 2013.03.13.

집합투자업자가 모자형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여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모자형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또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 대가로 자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Contacts

상기 내용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권지원 Tax & Legal Leader	김경조 Partner	정호석 회계사
+82 (2) 6676-2416	+82 (2) 6099-4279	+82 (2) 6099-4734
jekwon@deloitte.com	kyungjokim@deloitte.com	hosjung@deloitte.com

※ 본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80 개 이상 국가의 세금 뉴스 및 정보를 보려면 지금 tax@hand 를 방문하거나 tax@hand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메일 수신을 원치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Back to top